

高麗前期의 왕실호위 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二軍六衛를 중심으로*

김형중**

〈요 약〉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경호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전기는 절대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경호중심의 호위제도였다면, 고려후기 무신집권기에는 공식적 호위제도인 2군6위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고, 무신집권자의 신변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사적 경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고려전기의 관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 내군부(內軍部), 병부(兵部), 중추원(中樞院)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추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고려전기의 병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 2군6위와 공학군, 견룡군 등을 들 수 있다.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을 말하며, 국왕의 친위대였다. 특히 2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적호위와 관련하여, 6위 중 금오위는 궁궐·수도 개성의 수비, 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임무외에도 국왕이나 중국사신 등에 대한 호위업무 중 도로에서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리하고 선도·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하였고, 천우위는 궁전에서 대례(大禮), 대조회(大朝會)시에 왕을 시종·시위하는 친위부대였음을 문헌 등을 통하여 고증(考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곳곳에 산재(散在)해 있는 호위제도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자료들을 발굴하고 분석·평가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호위제도로서의 기구와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주제어 : 왕실호위, 친위대, 2군6위, 견룡군, 중추원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This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13.”)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高麗前期 이전의 왕실호위제도에 관한 검토 III. 高麗前期의 왕실호위제도 IV. 兵制上の 2군 6위의 왕실호위 조직과 기능에 관한 논의 V. 결 론 |
|---|

I. 서 론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권력의 가장 큰 무력장치는 군(軍)과 경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비군은 대외적으로 정복사업과 외침을 막기 위한 국가의 가장 큰 무력장치인 반면,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위협방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장치인 군과 경찰조직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권자의 존재는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권자에 대한 호위(護衛)는 통치권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항상 다루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특히 본 연구논문의 시기에 해당하는 고려전기의 경우에도 통치권자 즉, 국왕에 대하여는 강력한 호위수단의 확보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권이 창출되는 경우나 쿠데타 그리고 당쟁 등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호위조직을 강화시키는 등 신변보호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경호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경호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학문상으로 성립된 개념으로, 경

호란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제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김두현, 2003:27).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제도상의 경호를 뜻하는 것이며, 실정법상 일반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을 말한다.¹⁾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오로지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기술처럼 현대의 경호개념이 정의되어진다면, 고려시대의 경호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고려전기²⁾ 통치구조속의 호위경비(경호경비) 기구의 성격을 본다면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국가의 타행정부분에 혼입(混入)하여 분산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위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앙 호위경비기구로 관제(官制)³⁾상의 내군부, 병부, 중추원을 들 수 있고, 병제(兵制)상의 기구로는 2군6위, 공학군, 견룡군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고려전기의 호위조직과 기능이 분속(分屬)하여 각 기관마다 시행되었기 때문에 경호경비업무를 확연하게 구분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정한 체계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고려전기의 호위는 일반 행정과 군사제도 속에서 조직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호위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본다면, 정경현(1992)의 고려전기 2군6위제 연구, 김낙진(1994)의 고려시대의 견룡군, 유정수(1996)의 고려전기 6위제도 연구, 이성진 외(2007)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 전경숙(1997)의 고려 최씨 집권기의 도방, 김홍(2003)의 한국의 군제사, 전태인(2005)의 고려시대 무예활동을 통한 친위조직 연구, 그리고 김형중(2011)의 고려전기 금오위의 조직과 기능 등에 관한

1)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대통령 경호실과 주요 국내외 요인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의 행정작용은 그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김두현, 2003:28).

2) 고려의 시대구분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김상기, 1961:1; 이병도, 1972:8-109; 이기백, 1976, 132-225), 기본적으로 의종24년(1170년)의 무신란을 분수령으로 하여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다시 전기는 귀족사회가 성립하는 과정과 그 이후로, 후기는 1270년까지의 무신집권기와 그 이후의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공정한 반응을 얻고 있다(박용운, 1991:14).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를 무신란을 분수령으로 하여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견해에 따라 이론을 전개하였다.

3) 관제(官制)라 함은 협의로는 행정기관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제도만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독립기관들(예컨대, 고려시대의 어사대, 오늘날의 감사원 등)도 포함하여 모든 기관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반면 병제(兵制)는 군사상의 모든 제도(예컨대, 고려시대의 2군6위 등)를 말한다.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첫째, 고려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개괄적인 호위기구나 기능에 대한 연구이거나, 또는 고려후기 즉 무신집권기의 사적경호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한계점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고려전기의 공적경호(왕실호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이고 심화적으로 연구된 논문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고, 둘째, 기존의 연구물들은 대부분 2차 사료를 토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출처의 불명확성과 1차 사료인 원문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 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고려전기의 공적경호(왕실호위)제도 중에서 누락된 호위기관 등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등으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의 범위를 고려전기(고려건국초기부터 의종24년 무신난까지)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문헌상 삼국시대까지는 구체적인 경호조직과 그 기능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공적경호(왕실호위)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전기부터 공적경호(왕실호위)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그 근간을 찾아볼 수 있는 단초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전기는 절대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경호중심의 호위제도였다. 그러나 무신집권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전기의 공식적 호위제도 기구인 2군6위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국왕의 신변보다는 무신집권자들의 신변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사적(私的)호위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전기와 고려후기로 대별(大別)하여 접근하는 것이 고려사 일대의 호위제도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측 사료(史料)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고려도경, 통전(通典) 그리고 국내사료인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1차적 사료와 그리고 국내에서 발표된 각종 연구물 등을 2차적 사료로 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경호사적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 역사적·제도적·비교론적 방법 등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오늘날 공적 경호경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와 그 기능을 전방위적이고 심화적으로 체계화시킴으로써 경호사에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전통성 등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II. 고려전기 이전의 왕실호위제도에 관한 검토

고대에서부터 조선조까지의 왕실호위라 함은 오늘날로 보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성진 외, 2007:425). 현존하는 문헌상 단편적으로 최초의 호위기구와 그 기능에 대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다. 예컨대 백제의 경우 중앙관제로서 대신(大臣)급에 해당하는 6좌평이 국무(國務)를 나누어 맡았는데, 위사좌평(衛士佐平)은 그 중에서 숙위병(宿衛兵)을 관장하는 친위장관(親衛長官)이었다(이흥식 편저, 1982:1015; 삼국사기 권제24백제본기제2고이왕27년정월조). 한편 신라의 경우 진덕왕5년에 군사조직의 개편을 통해 시위부(侍衛府)가 설치되었는데, 그 운용에 있어서 병부(兵部) 또는 병부령의 지휘 통솔체계에서 벗어난 국왕 직속의 군사조직이었다(이병도, 1972:639). 시위부는 명칭 그대로 왕을 시위(侍衛)할 목적을 가진 금위병(禁衛兵)으로서 궁성의 숙위(宿衛) 및 왕의 행차시 호종(扈從,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김두현, 2003:76). 이들은 국왕에게 직속된 군사로서 항상 궁궐 내에 거주하면서, 경호경비에 당하였는데,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포위하는 반란군을 격퇴시키거나, 왕을 호위하다가 왕과 함께 피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⁴⁾

시위부는 그 뒤 신문왕5년(685년)에 장군6명, 그 아래 대감6인, 대두(隊頭) 15인, 향(項) 36인 그리고 졸(卒) 117인을 두었다. 신문왕이 시위부에 장군6인을 두는 조치를 취한 것은 김흠돌의 반란사건⁵⁾을 계기로 귀족들의 위협으로부터 전제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위부대를 강화하고 그 격을 높이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소속된 군인의 수는 장군 이하 졸(卒)까지 합하여 180인에 불과

4) 본 연구에서는 출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문 등을 밝혀내어 기술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다만 원문 등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자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해공왕 4년 7월에 “일길찬 대공(大恭)이 그 아우 아찬 대렴(大廉)과 함께 모반하여 많은 무리를 모아 궁전을 33일 동안이나 포위하였으나, 왕군(王軍)은 이를 토평하고 그의 9족을 주살하였다”고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다(秋七月一吉澹大恭與弟阿澹大廉叛, 集衆王宮三十三日, 王軍討平之, 誅九族)(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 해공왕4년 秋7월).

5) “...왕의 숙부 언승(彦昇)은 아우 이찬 계몽(梯蒙)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궁내로 들어가 난을 일으켜 왕을 시해하였는데, 왕의 동생인 체명(體明)도 애장왕을 시위(侍衛)하다가 피살되었다(王叔父彦昇與弟伊滄梯蒙, 將兵入內, 作亂弑王, 王弟體明侍衛王, 并害之...)(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제10 애장왕 10년7월)”고 삼국사기에 기술되고 있다.

6) 김흠돌은 신문왕 때의 소판(蘇判, 3등관)으로 딸이 신문왕의 비(妃)였다. 신문왕 즉위초에 파진찬 흥원과 대아찬 진공 등이 모반을 꾀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이 역모는 병부령(兵部令)까지 공모한 상당히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 제8 신문왕 元年8월).

했지만 그 중요성은 여타 다른 어느 부서보다 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史書인 구당서(舊唐書)⁷⁾에 “신라국은 본래 변한의 후예이다... 왕이 사는 곳은 금성(金城)으로, 둘레가 7.8리이다. 위병(衛兵)은 3천명으로 사자대(獅子隊)를 설치하였다(新羅國, 本弁韓之後裔也. ...王之所居曰金城, 周七八里. 衛兵三千人, 設獅子隊....”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근위병이 3천명으로 그 부대이름을 「사자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이들의 임무가 왕의 신변과 궁궐을 호위하는 근위병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 등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공적 경호 즉, 시위(侍衛)제도는 삼국시대를 기원점으로 하여 후삼국시대⁸⁾에 들어와서는 지방의 군현(郡縣)이나 호족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병(私兵)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私兵을 가진 호족세력들은 자기를 성주, 장군으로 칭하고 중앙정부의 명령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경찰권 행사 및 경호권 행사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형중, 1990:111-114).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 국가의 중앙조직이나 통제가 약화되면 국가의 공적기관보다 권력을 장악한 호족세력이나 무력에 의한 집권자의 私兵에 의해 치안질서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변보호 즉 사적 경호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려후기의 무신정권기의 사적 경호 강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경호의 기원은 후삼국시대를 기원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나⁹⁾, 문헌상 그 조직이나 기능 등에 대하여는 자료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점을 그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7) 舊唐書 東夷列傳 新羅傳.

8) 신라의 쇠퇴로 신라, 견훤의 후백제, 궁예의 후고구려의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왕건에 의해 고려가 재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약50년간(892-936)의 분열상태를 유지한 시기를 후삼국시대라고 한다.

9) 혹자는 장보고가 청해진(오늘날의 완도)에서 私兵을 길러 군진을 설치했던 것을 근거로 사적 경호의 기원점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신라 흥덕왕3년(828년)에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군사1만명을 주고 그를 청해진 대사로 삼았고, 신무왕(神武王)대에는 감의군사(感義軍使, 새로 만든 자리라 정확하게 어떤 군사권을 지녔는지 고증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상징적인 군사최고 지휘자의 위치가 아니었을까 추론된다)가 되었고, 식읍2천호를 주었다. 그 후 신문왕이 죽고 문성왕대에는 진해장군(鎭海將軍, 신라수군 전체를 통괄하는 직책으로 짐작됨)의 직책을 부여받았다(이이화, 1998:180-193). 이런 점에서 볼 때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국왕의 임명에 의해 당연히 청해진을 근거로 군선을 만들고 수군을 훈련시키는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 때의 병력은 당연히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를 위한 시위대 즉 경호부대도 공적 경호측면에서 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사적 경호의 기원점으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Ⅲ. 高麗前期의 왕실호위제도

1. 군사권과 경호권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

먼저 高麗前期 호위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전에 군사권과 경호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안위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군사권이 우선이며, 군사권은 국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고려사 兵志 序文에 “兵은 폭력을 막고 난을 제압하는 것으로써 천하국가를 가진 자는 진실로 없앨 수 없는 것으로 兵制의 득실은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것이다(兵者所爲 禦亂 有天下國家者 固有可廢 而兵制之得失 國家之安爲係焉)”(고려사 권81지 권35 兵一)라고 하여 兵制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배세력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군사력과 정치권력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건국초기의 왕권은 불안정하여 국왕들은 왕권강화에 부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고려국초에는 왕실세력이 일방적으로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하였다는 점(하현강, 1989:63), 둘째, 호족 개인의 세력기반은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어 중앙의 권력구조 내에 용해 흡수되지 않아 호족 개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私兵 등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간으로 볼 때, 호족이 거느린 私兵의 군사력에 의한 쿠데타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어느 날 태조가 어전에 앉아 학사(學士) 수인과 더불어 국정(國政)을 의논하는데 (임)선길이가 그 무리 50여명을 데리고 병기를 가지고 내정(內庭)에 돌입하여 태조를 시해하려 하자 이에 태조가 크게 꾸짖자 복병이 있는가 의심하여 무리들과 달아나므로 위사(衛士,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이 쫓아가 다 잡아 죽였다”(고려사 127 열전 권42 임선길전)는 기록이나, 태조 왕건에 이은 혜종은 “왕규¹⁰⁾가

10) 고려사 권127 열전 권42 왕규傳에 “왕건은 광주의 호족 왕규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광주원군을 낳았는데, 혜종이 즉위하자 왕규는 온갖 수단으로 광주원군을 임금으로 앉히려고, 2차에 걸쳐 혜종을 시해하려고 하였다. 혜종은 그의 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힘이 없었기에 숙청할 수 없었고, 그런 불안 속에서 병을 얻어 재위 불과 2년 만에 사망하였다. 혜종의 뒤를 이은 정종이 서경의 왕식렴(王式廉, 왕건의 사촌동생으로서 평양대도호부의 도독이었다)의 세력을 끌어들이어 왕규를 제거하고 아울러 그의 무리 300여명을 주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무리 300여명 등은 모두가 호족 개인에 충성을 바치는 군사적 기반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왕권이 미약한 관계로 경호권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란을 일으킨 이후로 의심하고 꺼려하는 바가 많아 항상 갑옷을 입은 갑사(甲士)로써 자신을 호위케 하였고(自王規 謀逆之後多少疑懼 以甲士自衛)(고려사 권2세가 권제2 정종), 그런 불안 속에서 병을 얻어 재위 불과 2년만에 사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려의 건국과 동시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문제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전기 시대에는 중앙에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친위군인 2군6위(二軍六衛) 그리고 지방에는 주현군(州縣軍)을 설치하였다. 특히 제4대 광종(光宗)은 왕권은 약하고 신하의 권력이 강한 현상을 타파하고자 노력하였다. 광종은 왕권강화를 위하여 건국 최대의 공신의 한 사람인 박수경의 여러 자식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장상(將相)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고, 주군(州郡)의 건장하고 날랜 자를 뽑아다가 숙위(호위)하는 군사를 늘렸다(이기백, 1968:58; 이이화, 1998:72).

고려사절요에 보면 그 때의 분위기를 “좋은 주인을 고소하며 자식은 부모를 참소하여 옥이 늘 가득차서, 임시감옥까지 만들었고, 죄없이 죽임을 당한 자가 잇달았다. 사람마다 두려워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다(고려사절요 권2 광종).¹¹⁾ 그리고 광종2년에 백관의 공복(百官의 公服)¹²⁾을 제정하여 벼슬아치들의 위계를 세운 것도 왕권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보면 고려건국 초기인 태조에서 정종대까지는 왕권이 미약한 관계로 쿠데타 등에 의한 국왕의 신변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은 반면, 제4대 광종대부터 일련의 정치적인 개혁들, 이를테면 노비안검법의 실시, 과거제도의 시행, 백관의 공복제정, 그리고 몇몇의 軍制의 개편 등을 통하여 강력한 왕권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쿠데타 등의 반란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의 신변에 대한 위협도 없었다는 점은 왕권과 군사권 그리고 경호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왕권의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상관성이 있는 것은 私兵의 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11) 광종7년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고 고려사절요는 전하고 있다(고려사절요 권2 광종).

12) 광종을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한 정치세력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호족이나 구신(舊臣)들에 비해서 그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의 公的인 인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광종으로서의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체제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공복(公服)의 제정이었다.

私兵의 존재는 군사권이 국왕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무신정권기의 의종·명종 조에 이르러 군사권이 私家에 소속되어 있어서 외적에게 침입을 당하여도 군사를 모아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등 兵制는 무너지고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大事가 군사에 있음을 망각한 소치였다고 볼 수 있다.¹³⁾ 이처럼 고려말에 들어와 私家에서 군사를 제멋대로 징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무관인 이성계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군사력의 뒷받침 없이는 국왕의 안전이 도모될 수 없고, 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이성무, 1999:27-28). 중세의 고려나 근세 조선의 국왕들이 금군(禁軍, 국왕의 친병)을 강화시키려 한 것이나 각 정치세력이 군사권을 장악하려 한 것도 다 이런 연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군사권이 국왕에게 집중되었을 때 경호권이 강화되고 정권이 안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국왕에 의한 군사력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경호권의 확대와 궤를 같이하며 이 두 요소는 권력유지를 위한 필요불가분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2. 官制 上의 호위관련기관

高麗前期의 관제상(官制上)의 경호관련기관으로는 고려초기의 내군부(內軍部)·병부(兵部)·중추원(中樞院)등을 들 수 있다.

1) 내군부(內軍部)

내군부는 고려초기 경찰업무의 일부 즉 궁중경호의 임무를 담당하였던 부서였다. 고려사 백관지 위위시(衛尉寺)¹⁴⁾條에 “의물(儀物, 儀仗에 관한 일), 기계(器械, 禮器 및 武器)를 관장하였다. 태조 원년에 내군경(內軍卿)을 두었다. 광종11년에 내군(內軍)을 고쳐 장위부(掌衛部)로 하였다가 뒤에 사위시(司衛寺)라 칭하였다. 성종 14년

13) 고려사에 의하면 “의종(毅宗)·명종 이후에 兵權이 아래로 옮겨져 날랜 장사와 굳센 士卒들이 모두 私家에 소속하여, 나라에 바야흐로 도적이 창궐하여도 국가에는 一旅(軍 五百人 정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오늘날 여단 정도의 규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의 軍士가 없어 졸지에 당황하고 어쩔줄 몰라하다가, 그런 연후에 비로소 다방면으로 調發(모아서 출동)하거나 혹은 경도(京都)에 모으되 귀천을 묻지 않았다... 國勢가 이에 이르니 비록 위태롭지 않고자 한들 어찌 하리요!!!(高麗史卷八十一 志卷第三十五兵一)”라고 한탄하고 있다.

14) 고려시대의 관서상의 「寺」는 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로 읽기 때문에, 「위위시」라고 부르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 위위시(衛尉寺)로 고쳤다. …… 공양왕 元年에 폐지하여 중방(重房)에 병합하였다’(고려사 권76志 권제30 百官一 衛尉寺條)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 내군(內軍)은 의물기계(儀物器械) 즉 궁중기물(宮中器物)을 관리하고 장악하였던 기관으로 풀이되어, 군사 및 경호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째, 태조원년에 내군(內軍), 내군장군, 내군경(內軍卿) 등의 명칭이 곳곳에 산재되어 기술되고 있다. 태조 즉위시 인사이동에 관한 기록 속에 능혜와 희필을 함께 내군경(內軍卿)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이고(고려사 권1 세가 권제1 태조), 또 내군장군(內軍將軍) 은부는 어려서 머리를 깎이고 목에 칼을 쓰고 있던 죄인이었는데, 말을 교묘하게 하고 아침에 능하여 궁에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참소하기를 즐겨 어질고 착한 이들을 무고하였으므로 주살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고려사 권1 세가 권제1 태조).

특히 고려초기 兵權과 군사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던 막강한 순군부(尙軍部)¹⁵⁾의 순군낭중 민강을 내군장군(內軍將軍)으로 임명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볼 때, 내군부는 단순히 궁중예식관련의 집기(儀器)와 기계(器械) 등 왕궁에 필요한 모든 기물(器物)을 관리하던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위위시의 변천경로를 보면 내군→장위(掌衛)→사위(司衛) 등의 명칭으로 개칭된 것을 보면 고려초기의 내군부는 궁중의 기물(器物)을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라 친위군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의물(儀物)이라 함은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고려도경¹⁶⁾에 보면 “왕의 순행(巡行, 순시)시에는 각기 의물(儀物)과 임금표시 깃발이 있고 앞서 달리는 갑옷을 입은 병사(甲士)가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6위의 군대가 의물(儀物)을 잡고 가는데 다른 여러 남방 이민족(오랑캐)들에 비하면 찬란하여 볼 만 하다”고 기술하면서, 그 의물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설

15) 고려왕조의 건국과 동시에 兵權을 장악하던 기관은 순군부(尙軍部)와 兵部였다. 순군부의 실체에 관하여는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김형중은 “고려국초 순군부의 실체에 관한 小考”에서 구체적이고 심화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김형중, 2013:203-231). 김형중에 의하면 순군부는 경찰관련 학자나 저서에서 고려전기의 중앙경찰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려전기 중앙경찰기관이 아니고 여러 호족들이 연결된 협의체적인 군사지휘권의 통수부였으며, 兵部보다 세력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16) 중국 송나라 서경이 1123년(고려 인종1년)에 송의 사신 노윤적을 따라 고려에 와서 수도 개성에 약 1개월간 머무르면서 견문한 것을 가지고 귀국하여 1124년(고려 인종2, 송 선화6년)에 완성한 고려에 관한 견문록이다(이홍식, 1982:115).

명하고 있다(고려도경 권제9 의물1).

첫째, 반리선(盤螭扇, 한 마리 용그림 부채를 말함)은 두 개인데 가운데는 황룡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그림이 수놓아 있는데, 그 모양은 뿔이 하나이고 비늘은 없다. 왕이 행차할 때면 앞을 비단 옷감으로 포장을 쳐 바람을 막는데 친위군(오늘날 경호부대)이 이를 잡고 잔치를 할 때는 뜰 가운데 세우며 예식이 끝나면 치운다. 둘째, 쌍리선(두마리 용 그림 부채)은 넷으로 대체로 반리선과 같고, 예식을 행할 때는 친위군이 이를 잡는다. 셋째, 수화선(꽃을 수놓은 부채)은 가운데 모란꽃 둘을 수놓았는데, 예식을 행할 때 이선(螭扇, 반리선과 쌍리선을 말함) 다음에 줄지어 세우는데 친위군이 잡는다. 넷째, 우선(羽扇, 깃부채)은 새의 깃으로 만든 4개의 부채인데, 예식을 행할 때는 금꽃(金花)으로 장식한 굵은 모자를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친위군의 장군으로 이를 들게 한다. 다섯째, 곡개(曲蓋, 일산 또는 양산을 말함)는 둘인데, 왕이 출입할 때는 그것을 받쳐들지 않고 호위군이 들고서 수십 보 앞에 가게 하는 것으로 의식을 삼는다고 서국은 고려도경에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의물(儀物)은 군대에서 임금행차시 사용하는 시위용품(侍衛用品, 경호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군(內軍)은 단지 의물의 공급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갖고 시위(侍衛, 경호)를 하는 군대 즉 친위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태조 즉위 원년 정부 개편시에 능혜와 희필 두 사람을 함께 내군경(內軍卿)에 임명하였다는 점, 전 내군장군으로서 궁예왕의 총애를 받던 은부(兪鈇)를 목벤 사실, 순군낭중 민강을 내군장군으로 임명한 사실, 임금행차시 사용하던 의물(儀物) 등을 친위군이 들고 의식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보아 내군부(內軍部)는 고려초기 왕궁 경호 등의 책임을 맡았던 부서가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관리 중에서도 내군장군 같은 직위는 국왕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상당히 군대 통솔에 유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想定할 수 있겠다(이기백, 1968:56; 내무부치안국, 1972:91). 그러나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고려건국 태조 때 경호 업무를 맡던 내군부가 지속적으로 궁중경호를 전담했던 것은 아니고, 성종14년 관제대개편시 위위시(衛尉寺)로 개칭되면서 그 업무도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器物)을 관리하는 업무로 변경하게 되었고, 궁중 경호는 二軍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병부

병부(兵部)는 신라의 관청으로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법흥왕4년(517년)에 설치하였다. 고려시대 병부는 신라 및 태봉의 제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6부(이.호.예.병.형.공부) 중 하나로서 3성(省)중 상서성에 직속되어 소관실무를 분장 하던 관서였다. 兵部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정부분 치안에 관한 계획과 결정 등 국가의 중요의제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사 백관조에 보면 병조(兵曹)의 임무는 무선(武選), 군무(軍務), 의위(儀衛), 의장위병, 의장대), 우역(郵驛)의 정사(政事)를 관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고려사 권76志권제30백관1). 여기서 무선(武選)은 군인이 선발을 뜻하는 선군(選軍)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편적으로는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군사를 징발·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특별히 특정군인의 선발이나 양반층의 유협자제(遊俠子弟) 및 향리층을 대상으로 하여 무예, 가문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변태섭, 1986:445). 따라서 이 중 무관에 관한 인사행정과 의장위병 등은 경호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중추원

중추원(추밀원 또는 밀직사로도 부름)은 왕명출납, 궁중숙위(宿衛) 및 군기(軍機) 등을 맡아보던 특별관청으로 성종10년에 설치되었다(고려사 권76 백관지 1 밀직사조). 현종1년에 중추원을 폐지하고 중대성(中臺省)을 두어 이 때 비로소 왕명의 출납, 숙위, 군기(軍機)를 맡아보게 하였다. 현종2년에 중대성을 폐지하고 다시 중추원을 두었고, 충렬왕 원년에 밀직사(密直司)로 개칭하였다. 공민왕5년에 추밀원으로 고치고, 공민왕11년(1362년)에 다시 밀직사로 개칭하였다(고려사 권 76 志 권 제31 백관 1). 중추원은 상·하 이중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즉 종2품인 판원사1인, 원사(院使)2인, 지원사(知院事)1인, 동지원사(同知院事)1인, 그리고 부사(副使)2인, 첨사원사(簽使院事)1인, 직학사(直學士)1인으로 추(樞)7(추밀7職)로서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반면 정3품인 지진사(知秦事)1인, 좌우승선(左右承宣)각1인, 좌우부승선(左右副承宣) 각1인을 통틀어 승선(承宣)으로 호칭되면서 하층부를 이루고 있었다(변태섭, 1971: 95-96).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그 집사기구로 추부(樞府)와 승선방(承宣房)을 따로 갖고 있었다. 따라서 추밀(樞密)과 승선(承宣)은 같은 중추원의 관원이지만 지위상으로뿐만 아니라 직능상으로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다.

상층부인 중추원 추부(樞府)는 3성(三省)과 합칭하여 양부(兩府)라 하고, 양부(兩府)의 고관(高官)을 재추(宰樞)¹⁷⁾라 불렀는데 국가의 최고기관이었다. 추부(樞府)의 관장사항은 「군기(軍機)에 관한 政事」였다. 여기서 군기(軍機)라는 말은 군사기밀 또는 군사기무(軍事機務)라는 의미로 풀이되며, 결국 중추원은 군정(軍政)을 장악하는 관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추밀은 비단 군사뿐 아니라 국정전반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추밀에 반대되는 하층부의 승선단(承宣團)은 왕명 출납을 관장하였다. 즉, 군왕에게 올라가는 백관(百官)의 장계(狀啓)나 품달사항 등은 승선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었으며, 반대로 왕명이 하달될 때에도 승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승선은 안건의 품달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승선은 요직의 관원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內相이라고 불리었다(박용운, 1991: 95). 이밖에 중추원은 숙위(宿衛)를 관장하였는데 경호사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숙위」라 함은 궁성 내지 왕실에 대한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 있어서 궁성의 숙위에는 대체적으로 두 갈래 측면에서 숙위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무인(武人)이 병기를 들고 궁성의 내외를 문자 그대로 숙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중방(重房)¹⁸⁾등 군사기관에서 담당하였다. 다른 하나는 문신들에 의한 궐내 숙위를 말한다. 따라서 군사에 의한 궁성숙위와 중추원 자체로서의 숙위와는 그 성질과 기능면에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찰대학 강욱 외 편저자들이 저술한 한국경찰사에서, 중추원은 왕궁에 숙직하는 근위병의 기관으로서 왕명의 출납과 숙직경비(숙위) 및 군기(軍機)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 중 숙위(宿衛)는 왕궁경호의 임무로서 오늘날의 청와대 경비에 해당한다고 서술하고 있다(강욱 외, 2006:54). 그러나 이는 오류적 견해이다. 왜냐하면 중추원의 숙위는 중추원 자체의 문신들에 의한 궐내 숙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인(武人)들처럼 병기를 들고 궁성의 내외를 경비경호하는 숙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고려시대에 있어서 궁성의 숙위에는 두 갈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

17) 재추(宰樞)의 합좌아래 국가의 중대사를 합의 결정하는 최고의 정무기관이 바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였다.

18) 고려시대의 중앙군으로는 왕의 친위군인 응양군, 용호군의 2군과 수도경비와 국경방어 임무를 맡은 6위를 두었다. 이들 부대에는 상장군, 대장군 등의 무관을 두어 지휘하게 하였는데, 2군6위의 상장군, 대장군으로 구성되는 군사최고회의 기구가 중방이었다. 여기서 군사문제를 다루었는데, 중방은 무신정변 이후 권력의 중추기관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왕궁경호의 임무로서 오늘날의 청와대 경비(예컨대 경찰에서 맡아보고 있는 101경비단의 기능)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고려사 백관지 밀직사(密直司)조(條)에 “밀직사는 출납, 숙위, 군기(軍機)의 政事を 관장하였다.”(掌出納宿衛軍機之政)(고려사 권76志 권제30 百官一)라고 하고 있다. 연이어서 기술하기를 “성종10년에 병관시랑 한언공(韓彦恭)이 송(宋)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와 아뢰기를 「송의 추밀원은 즉 아조(我朝, 고려조를 일컬음)의 직숙원리(直宿員吏, 숙직하는 관리)의 직무입니다」라고 하니 이에 처음으로 중추원을 두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숙(直宿)이라 함은 숙직과 같은 뜻으로 문신들의 궐내숙위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박용운, 1976: 122-125).

다만 직숙(直宿, 숙직)이라 하더라도 궐내의 왕실 시위(侍衛)의 뜻까지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위」라고 표현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은 숙위(宿衛)라는 단어에만 집착하여 중추원이 마치 文人과 武人の 궁성 숙위를 총괄한 관부인 것처럼 해석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중추원은 이밖에도 의례(儀禮) 및 궁중의 서무(庶務)를 주관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으나, 후기로 접어들면서 兵政을 담당하게 되면서 다른 관부로 넘겨주게 되었다. 그 결과 후기의 중추원은 고려전기의 왕명출납과 직숙(直宿)업무를 계승하면서 군기(軍機)까지 아울러 장악하게 되었다(박용운, 1991:96). 따라서 중추원(밀직사)은 고려사 백관지 밀직사조(條)에 기술되어진 것처럼 출납, 숙위, 군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부로 발전하여 갔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고려전기 관제상의 호위(경호)관련 기관인 내군부, 병부 그리고 중추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兵制상의 호위관련 기구인 2군6위에 대하여는 부제상의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장(章)을 달리하여 고찰하였음을 밝혀둔다.

IV. 병제(兵制)상의 2군6위의 왕실호위 조직과 기능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 경호사적 측면에서 고려전기의 2군6위(二軍六衛)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문헌상 삼국시대에는 호위제도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기술되고 있고, 그 조직이나 기능면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려전기의 2군6위 제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고려사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 송(宋)대의 서공이 쓴 고려도경에서도 그 당시의 임금 행차시 행하는 호위기관이나 기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단서 등을 상당부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전기의 2군6위 제도는 우리나라의 호위(경호)제도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2군6위의 성립과정

고려는 외적을 방어하고 왕권강화와 국왕의 신변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무력 장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 개성에 보통 경군(京軍)이라 불리는 중앙군을, 지방에는 주현군(州縣軍)을 두었다. 그 중 경군(京軍)은 2군6위의 8개 부대가 중앙조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6위(六衛)제도가 二軍제도보다 먼저 성립되었기 때문에 6위제도부터 순서상 고찰하였음을 밝혀둔다.

1) 6위의 성립과정

고려전기의 중앙군사제도인 6위의 설치는 태조2년에 설치되었다고 고려사는 기술하고 있다. 고려사 백관지 序文에 “태조2년에 3성(三省), 6상서(六尙書, 6부를 말함), 9시(九寺), 6위제(六衛制)를 세우니 대개 당제(唐制)¹⁹⁾를 모방하였다”는 기술과, 또 高麗史 兵志 兵制 五軍條에도 “태조2년 정월에 6위(六衛)를 두었다”(高麗史 卷八十一 兵志 兵制 五軍條)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의 중앙관제인 6위제도가 태조2년에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후대의 고려사 편저자도 고려전기의 중앙관제와 兵制가 어느시기에 성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유정수, 1996:13). 예컨대 고려사에 보면 “태조2년에 서울을 송악의 남쪽에 정하고 궁궐을 짓고 3성, 6상서, 9시(九寺) 등을 두고 시전(시장의 점포)을 세우고 방리(坊里, 고을 또는 동네)를 가르고 五部를 나누는 동시에 6위(六衛)를 두었다”(고려사 권1 세가 권제1 태조1 2년 정월)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고려사라 하더라도 兵志 序文에는 “고려 태조가 삼한

19) 당은 16위(衛)이지만 고려전기의 중앙군제는 6위와 2군 제도였다.

을 통일하여 처음으로 6위(衛)를 두었다.”²⁰⁾라고 하여 삼한 통일 이후 6위를 두었다고 하고 있지만, 그 연대는 어느 시기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또 고려사 성종세가에서는 성종2년 5월조에 “처음으로 3성6조(六曹, 6부를 말함), 7시(七寺)를 두었다”(고려사 권3 세가 권제3 성종2년5월조)고 하여 태조세가2년 정월조와는 상이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고려사 편저자들이 명확하게 중앙관제와 병제의 성립시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둘째, 태조대의 현존하는 문헌상 6위(六衛)의 實在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사료가 없다는 점도 6위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셋째, 필자가 생각건대 만약 태조2년에 6위제(六衛制)가 성립되었다면 앞에서 기술한 사례 즉 태조가 어전에서 학사들과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임선길이 무기를 든 50여명의 소수의 사병(私兵)을 데리고 어전까지 침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태조 왕건에 이은 혜종은 항상 신변에 위협을 느껴 갑옷 입은 군사(甲士)로써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고, 그런 불안 속에서 병을 얻어 재위 불과 2년 만에 사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6위 중 천우위는 왕을 시종·시위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는데 병력수는 2천명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력을 갖고 왕을 호위하는 부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선길이 소수병력인 50명을 데리고 어전까지 침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태조2년 설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의문점 등으로 보아 태조2년에 6위가 완전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6위의 성립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시기는 성종14년(995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학계의 통설적인 견해이다. 이기백은 이에 대하여 목종元年(998)에 제정된 전시과(田柴科)²¹⁾의 지급대상자 속에 이미 「6위」, 「諸衛」등의 단어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위가 형성된 것은 목종의 바로 前王인 성종대에 설치되었을

20) 高麗太祖統一三韓始置六衛(高麗史 卷81 志 卷제35 兵一).

21) 전시과는 고려 때 전제(田制)의 하나이다. 이 전시과는 문무양반 및 군인을 18科로 나누고 과(科)마다 지급한 전(田, 토지)과 시지(柴地, 땔나무 등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의 수량을 정하였다. 군인도 제17과에 마군(馬軍), 제18과에 보군(步軍)이 있어서 각기 田23결(結) 및 20결씩을 받았다(고려사 식화지1 田制 전시과). 군인전은 20세가 되면 받고, 60세에는 반환하였지만 자손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은 그 토지를 대신 받을 수가 있었다(이홍식 편, 1982:1328).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고려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 해가 성종14년대(995년)이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6위의 성립시기는 성종14년(995년)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6위의 조직 및 편성

(1)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감문위.

6위는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오위, 천우위, 감문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감문위(監門衛) 4위는 호위(護衛)와 깊은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논하기로 하겠다. 좌우·신호·흥위의 3위(衛)는 경군(京軍)의 핵심이 되는 주력부대이다. 좌우위의 병졸은 보승(保勝) 10(領)과 정용(精勇) 3(領)으로 보승군은 1만명이고 정용군은 3천명으로 좌우위에 모두 1만3천명이 편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각 6위에 속해있는 보승과 정용은 보군(步軍)과 마군(馬軍)의 병종별(兵種別) 구분으로 추측되고 있다(이기백, 1968: 72). 그리고 고려때의 1령(領)²³⁾은 1,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휘관은 상장군1인(정3품), 대장군1인(정4품)이 있었고, 장군 밑의 중랑장(정5품)은 각 위마다 2인으로 장군의 보좌관이었다. 중랑장 밑에는 낭장(정6품)이 거의 모두 영(領)마다 각 5인으로 이들은 200명으로 조직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낭장 밑에 별장(別將, 정7품)은 부지휘관, 산원(散員, 정8품)은 낭장과 별장의 보좌관 그리고 대정(隊正)은 25명으로 구성된 최하위단위부대의 책임자로서, 대정은 각각의 영(領)에 40인씩 있었다(이기백, 1968:71-74).

신호위의 병졸은 보승5령(領)과 정용2령(領)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모두 7천명이었다. 여기서도 장교와 병졸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 편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각 영(領)의 병졸이다. 신호위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상장군1인과 다음 지휘관으로서 대장군1인을 둔 것은 각 위(衛)가 다 공통이다.

흥위위(興威衛)의 조직편성은 보승7령(領)과 정용5령(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졸은 1만2천명이었다. 상장군 이하 대정(隊正)이상의 지휘관의 조직은 다른 위(衛)와 같다.

22) “성종이 크게 제도를 새롭게 하여 내외의 官을 정하였으니 안(중앙)으로는 성(省), 부(部), 대(臺), 원(院), 시(寺), 사(司), 관(館), 국(局)이 있고, 밖(지방)으로는 목(牧), 부(府), 주(州), 현(縣)이 있었으며 관(官)에는 상수(常守, 일정의 규칙)가 있고 위(位)에는 정원이 있어 일대의 제도가 비로소 크게 갖추어졌다”(고려사 권76 백관지1 서문 성종조)고 고려사는 기술하고 있다.

23) 고려시대의 군제(軍制)의 특징은 각 부대의 병력이 영(領)단위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정경현, 1992:98).

따라서 3위의 편성은 그 군사수가 32령(領) 32,000명으로 전체 중앙군 45,000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박용운, 1991:285). 3위의 군사는 평상시에는 수도 개경을 지키고 1년 교대의 변방지역 방수(防戍, 변방을 지키는 것)에 복무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중.전.후.좌.우의 5軍 편제를 이루어 전투에 임하였다(이기백, 1968: 132-141).

감문위는 1령(領)으로 되어있다. 위(衛)에는 상장군1인, 대장군1인을 두었다. 영(領)에는 장군1인, 중낭장2인, 낭장5인, 별장5인, 산원5인, 위(尉)12인, 대정 40명이 있었다. 감문위의 조직편성은 1령(領)으로서 6위 중 제일 적은 1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감문위는 여타 다른 위(衛) 소속 영(領)들과는 달리 특별한 고유 명칭이 없는데(예컨대, 보승. 상령. 해령 등), 이는 감문위의 임무성격 상 특별부대 명칭이 붙지 않는 것 같다(유정수, 1996:22). 감문위는 국왕의 신변을 시종하던 부대라기 보다는 궁성내외의 여러 문을 수위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이상으로 4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였고, 이하에서는 국왕의 공적경호와 관련된 금오위와 천우위의 조직과 편성 그리고 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2) 금오위

고려시대 금오위는 중국 당(唐)의 十六衛 제도를 답습하였다. 금오위는 정용6령(領)과 역령(役領) 1령(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衛)에는 상장군1인(정3품), 대장군1인(중3품)이 있고, 각 영(領)에는 장군(정4품) 각1인, 중낭장(정5품) 각2인, 낭장(정6품) 각5인, 별장(別將, 정7품), 산원(散員, 정8품) 각5인, 위(尉, 정9품)는 각12인, 대정(隊正) 각40인이었다. 따라서 금오위의 조직편성은 정용6령과 역령1령으로 병졸은 7천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금오위는 3위(좌우위, 신호위, 흥위위)에 있던 보승군이 없고 대신 역령(役領)1령(領)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역령(役領)은 역군(役軍)과 동일한 뜻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명칭은 노동부대이거나, 또는 역령(役領)이 금오위에 소속된 것을 보면 혹은 복역하는 죄수의 감독군이지 않았을까 추측되나 자세한 임무는 잘 알 수가 없다(이기백, 1968:90; 박용운, 1991:286; 유정수, 1996:22).

(3) 천우위(千牛衛)

천우위는 상령(常領)1령(領)과 해령(海領)1령(領)으로 편성되어 있었다.²⁴⁾ 위(衛)에

24) 상령과 해령은 천우위의 임무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후술하였다.

는 상장군1인, 대장군1인 그리고 각 영(領)에는 장군1인, 중낭장 각2인, 낭장 각5인, 별장 각5인, 산원(散員) 각5인, 위(尉) 각20인, 대정 각 4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천우위의 조직편성은 상령1명과 해령1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병졸은 2천명이었다. 천우위는 상령(常領)과 해령(海領)으로 편성된 것이 여타 위(衛)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3) 금오위와 천우위의 임무

(1) 금오위(金吾衛)의 임무

금오위는 오늘날의 경찰업무를 대부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 다. 그 근거로 고려말 충선왕 이후 여러번 순라(巡邏) 경찰을 의미하는 비순위(備巡衛)로 고쳤던 史實을 들고 있다. 고려사 백관지 서반(西班)條에 “충선왕이 금오(위)를 고쳐 비순(위)(備巡衛)라 하였다. 공민왕5년에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11년에 다시 비순위라 하였으며, 18년에는 다시 금오위라 칭하였고 뒤에 다시 비순위로 고쳤다”(고려사 권77志 권31 백관2 서반조)라고 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중국 당(唐)의 제도를 답습하였는데, 충선왕 이후로 금오위의 칭호를 여러번 순라경찰(순찰)을 의미하는 비순위로 개칭되는 과정과 관직명 그리고 인원수만을 기록한 史實 이외에는 관장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현존하는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김형중, 2011:14). 따라서 중국 당대(唐代)의 금오위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그 유사성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① 중국 당(唐)대의 금오위의 조직과 운영

당의 禁軍(궁궐의 숙위와 어가의 호종을 담당하는 軍을 말함)은 남아금군(南衛禁軍)과 북아금군(北衛禁軍)으로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²⁵⁾ 남아금군은 16위(衛)로, 북아금군은 6군(六軍)으로 구성되어 남아(南衛) 16위와 북아(北衛) 六軍으로 부른다. 당위 16위 제도는 수(隋)나라를 기본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唐초부터 그 체제가 존재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궁성과 황성의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중 좌우금오위만 외성에 있었고 나머지 15위는 모두 황성 내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금오위의 임무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 금오위의 임무는 궁중과 경성(京城, 수도)을

25) 신당서(新唐書) 권50 兵志; 통전(通典)권28 직관(職官)10무관(武官)上.

대상으로 순찰²⁶⁾과 봉후(烽堠, 봉화를 올리는데 쌓아올린 보루), 도로 등을 담당했는데, 이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외성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특히 금오위의 임무 중 하나가 황제가 궁성 밖을 출입할 때 도로에서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를 정리하고 선도해서 호위했다는 史實은 당(唐)이전의 한무제초 원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우가 편찬한 통전(通典)에 의하면 “한무제 태초 원년에 진(秦)대의 중위(中尉)를 집금오(執禁吾)라 개칭하였는데, 안사고(顏師古)가 말하기를 금오(金吾)는 새의 이름이며, 좋지 않은 것을 피하는 것이다. 황제가 궁성 밖을 출입할 때 주로 선도(先導)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하였다. 붉은 비단옷을 입은 기마병 2백인과 5백20여명의 수레꾼이 따랐는데, 그 길이 빛이 났고 도로가 꼭 찻았던 것이 군사 무리 중에서도 최고의 장수들이었다”²⁷⁾(통전 권28 직관(職官)10武官上)고 기술하고 있다. 또 당(唐)대의 당6전(唐六典)을 보면 “금오위는 무릇 거마(車馬)가 출입할 때 붉은 새가 그려진 기(旗)를 들고 선구(先驅)하였다”(凡車馬出入…朱雀旗以先驅)(唐六典 권25 諸衛府 금오위)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금오위는 천자가 궁성 밖 출입시 천자의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부대가 아니라 미리 선두에 나아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발생 상황을 처리하여 도로를 정상대로 유지하는 임무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고려전기의 금오위의 임무는 어떠하였을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② 고려시대 금오위의 기능

六衛중의 하나인 금오위는 수도 개성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軍이자 경찰부대였는데, 이러한 일은 주로 이곳 소속의 정용군이 담당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이기백, 1968: 72-73). 금오위의 소속 장병은 정용6령과 역령1령으로 합 7,000명의 군사가 있었다. 이러한 군사들을 지휘하여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간부로는 상장군1인, 대장군1인, 영(領)에는 장군 이하 대정(隊正)까지 78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처럼 금오위의 상부조직체계가 편성·운영되었다면, 군이자 곧 경찰로서 병사를 겸하는 실질적

26) 중국 당대 금오위의 직책 및 관장업무 중 순찰에 관해서는 순찰인원 및 요령 그리고 책임의 한계까지 중국의 史書인 신당서(新唐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금오위 소속하에 있는 좌우가사(左右街使)는 순찰을 주업무로 하였다. 좌우가사는 날이 지면 북을 치고 문을 닫고 을야(乙夜, 22:00경)에는 가사(街使, 거리 순찰하는 관리)가 기졸(騎卒, 기마병)로 변장 미행하면서 무관들을 불러 순찰 등에 대한 감독을 하였다. 5경(更) 2점(點)에 성안에서 북을 치면 여러 거리에서 북을 울리면서 방시(坊市)를 다 열어놓는데 북을 3천번 때려 흰히 밝아서야 순찰을 그쳤다.”(신당서 권49 백관상 좌우금오위)라고 하여 좌우가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7) 필자의 해석과 다른 각도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인 하위체계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금오위에 속한 인원은 7,000여명이었다. 이 중에서 역령1령(1,000명)을 제외한 정용군 6,000여명이 실질적으로 수도 개성을 중심으로 궁궐·도성의 수비는 물론 수도 개경에 있어서의 출입자의 감시, 임금행차나 사신영접 등의 선도경호, 순찰, 야간통행금지, 포도금란(捕盜禁亂) 및 풍속·윤리 등의 치안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금오위 군사에게는 군인전이 지급되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복무정비(옷과 무기 그리고 식량, 필요한 물품 등)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금오위 등 중앙군에 배속된 하급무인들의 사기는 형편이 없었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史實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의종9년3월조에 “왕이 보현원으로 어가를 이동하는데, 날씨는 춥고 비가 심히 와서 위졸(衛卒) 중 동사(凍死)한 자가 9인이나 되었다”(고려사 권 18세가 권제18 의종19년3월조)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같은 보급문제나 근무의 혹사 등은 치안의 부재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불만은 무인난의 발생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²⁸⁾

다음으로 금오위는 어디에 위치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개경의 주요관청은 개경 궁성내외로부터 황성안, 황성바깥의 일정구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황성 안에는 중서성, 상서성, 추밀원 등이 있었고, 황성 밖에는 동문(정문)인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난 관도(官道)에 주요관청이 늘어서 있었다(전경숙, 2010:425). 고려도경에 의하면 “관도의 북쪽에는 서쪽으로부터 차례로 호부, 공부 등이, 관도의 남쪽에는 병부, 형부, 이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리고 감문위(監門衛), 천우위(千牛衛), 금오위(金吾衛)는 북문 안에 있으나, 금오(金吾)가 조금 동쪽에 있는 것은 수비와 호위의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監門, 千牛, 金吾三衛在北門內, 而金吾稍近東, 所以典兵衛之禁)(고려도경 권16官府).

따라서 감문위, 천우위, 금오위의 순으로 관도의 북쪽인 제상리 쪽에 있었고 궁성 내외의 諸門(여러문)을 담당하는 감문위와 왕의 행차에 동원된 천우위는 궁과 가까운 서쪽에, 개경의 방어와 치안을 담당한 금오위가 좀 더 동쪽에 위치하여 군대의 동원 및 치안유지에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끝으로 금오위의 경호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금오위의 임

28) 무신난 때 하급 무인들에 호응하여 졸오(卒伍, 일반군인)가 봉기했는데, 이들이 봉기했다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누적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무는 궁궐·수도개성의 수비·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 등을 주임무로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의 궁성 밖 출입이나 중국 사신 등을 영접할 때 호위기능을 수행하였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공의 고려도경 절장(節仗, 의전과 행사)²⁹⁾편에 사신이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상륙한 후 도성에 들어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고려도경 권제24 節仗).

“근년에 사신이 고려국에 갈 때마다 사신을 맞이하는 준비된 의장(儀仗, 의전과 행사)의 화려함과 호위하는 군사도 많았으며, 예의가 심히 근면하고 지성스러웠다. 사신 영접시에 맨 먼저 여러 의장대 가운데 신기대(神旗隊)가 선두에 서고, 청의(青衣) 용호군이 투구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었는데 거의 만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서 길을 끼고 행진하며, 다음은 기병(騎兵)이 따랐는데 활과 화살을 가졌고 칼을 찻으며…다음에는 천우위, 다음은 금오위로서 금오장위군(金吾仗衛軍)이 오는데 황색 깃발과 표범 꼬리가 달린 의장용 창 및 꽃무늬로 장식된 덮개 천막을 잡고 약간의 간격을 두고 행진한다… 맨 마지막으로 正使와 부사(副使) 순으로 따르고 있다”고 행렬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금오위가 사신을 영접하는 의전과 행사시에도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도경 장위(仗衛)³⁰⁾편에서, 서공은 “고려 왕성(王城)의 호위군사의 위용은 타군(他郡, 다른 왕국)에 비하여 아주 성대하며, 대체로 날쌔고 용감한 군사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평하면서 고려조의 군사조직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중 금오위에 관하여 “금오장위군은 검붉은 색의 소매 넓은 적삼을 입었으며 모자(두건)을 말아서 쓰는데 윗부분은 색깔로 물을 들여 묶었다. 각각 방위별 빛깔에 따라 한 방위가 한부대(隊)가 되고 한 부대가 한 빛깔이 된다. 사이사이에 둥근 꽃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였다. 깃발과 덮개가 같은 의식용 물건을 들고 창합문(대궐문)밖에 서있다”(고려도경 권제11 장위)라고 하고 있다.

위의 사례 등을 토대로 볼 때 금오위는 사신을 영접하는 의전과 행사시 군 부대로는 맨 마지막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 금오장위군은 깃발과 덮개가 같은 의식용 물건을 들고 창합문(대궐문) 밖에 서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즉 금오위가 왕의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2군(용호군과 응양군)과는 달리 창합문(대

29) 사신에 대한 의장(儀仗, 의전과 행사)을 말한다.

30) 군사조직을 말한다.

궐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미리 도로에서의 비상 사태에 대비한 위험요소들을 미리 처리하여 도로를 정상대로 유지하는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唐)대의 천자가 궁성밖 출입시 천자의 최측근 경호부대가 아니라 도로에서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를 정리하고 선도해서 호위하던 금오위 임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오위는 궁궐·수도개성의 수비·순찰 및 포도금란(捕盜禁亂)의 임무 외에도 국왕이나 중국사신 등의 신변보호와 관련된 도로상의 호위업무도 당연히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천우위(千牛衛)

고려사 여복지(輿服志, 의장과 복식에 관한 규정)³¹⁾ 의위조(儀衛條)에 “전상(殿上, 어전)에는 상장군(上將軍)2인, 천우대장군(千牛大將軍)2인이 모두 좌우로 나뉘고 천우비신장군(千牛備身將軍)4인, 비신장군(備身將軍)4인이 각각 좌우로 나뉜다. 전문의(殿門外, 궁궐문의)의 의위(儀衛)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고려사 권72 여복지1 의위조). 즉 어전에는 상장군2인과 천우대장군2인이 국왕을 중심으로 좌우로 1인이 배치되고 천우비신장군4인이 또한 국왕을 중심으로 좌우로 2인씩, 그리고 비신장군4인이 좌우로 2인씩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천우대장군, 천우비신장군, 비신장군은 천우위 소속으로서 궁전에서 대례(大禮), 대조회(大朝會)시에 왕을 시종·시위(侍衛)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비신(備身)이라 함은 국왕의 신변경호를 뜻하는 말이다(유정수, 1996:28).

신당서(新唐書)에 보면 좌우천우위는 “지휘관으로 상장군 각1인, 대장군 각1인, 장군 각2인이며, 임무로는 황제의 시위를 관장하고 황제가 사용하는 병장기를 제공한다. 천우(千牛)와 비신(備身, 병사직급)은 좌우 모두 활과 화살을 갖고 숙위한다. 조회 시에는 비신을 통솔하며 좌우가 모두 전(殿, 어전)에 올라 늘어선다”(신당서 권39 백관4 16위조)라고 하여 고려조의 천우위의 임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천우위의 조직편성은 상령(常領)1령(領)과 해령1령(領)으로 되어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령과 해령에 대하여는 문헌상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기백은 천우위 임무에 비추어 볼 때 상령(常領)은 왕의 시종을 위한 육군이었던 것은 아닐까 추론하고 있고

31) 의종대에 의장(儀章)과 복식(服飾, 복장)에 관한 제도가 완비되었는데, 이를 제도화 한 것이 여복지(輿服志)이다.

(이기백, 1968:90), 박용운은 상령은 육상에서 국왕의 시종을 담당하던 육군의장대였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박용운, 1991: 286). 그러나 정경현은 평상시에 국왕을 숙위 시종하는 군사들이었다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고려사에 상령과 해령으로 구분되어 기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령은 평상시에 육상에서 국왕을 숙위 시종하던 군사들을 지칭한 것이 아닐까 想定되어진다.

반면 해령(海嶺)에 대하여 이기백은 왕의 시종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조직된 水軍이었다고 보고 있고(이기백, 1968:90), 박용운은 해군으로서 해상 또는 수상(水上)에서 국왕의 시종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박용운, 1991: 286). 따라서 해령(海嶺)은 국왕이 바다나 강 등으로 갈 때에 왕을 시종하는 해군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끝으로 천우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 서궁이 지은 고려도경에 보면 “천우(千牛)는 북문안에 있었고, 감문위, 천우위, 금오위의 순으로 관도의 북쪽인 제상리 쪽에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려도경 권16관부). 따라서 궁궐 내외의 수비를 담당하는 감문위 그리고 왕의 행차에 동원된 천우위는 궁과 가까운 서쪽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지근 거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2군(二軍)의 성립과정

고려시대의 경군(京軍)은 2군6위로 편성되어 이를 합쳐서 8위(八衛)라 하였다(고려사 77 백관지2 西班條). 二軍은 응양군과 용호군을 말하며, 국왕의 친위부대였다. 6위는 성종14년(995년)에 편성되었다고 보았는데, 2군의 성립은 6위보다 좀 더 뒤지는 현종조 무렵으로 보는 것이 사학계의 다수의 견해이다(이기백, 1968:69-79; 정경현, 1992:96). 2군의 성립과정과 관련하여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나주로 피신하는 등 여러차례 신변의 위협을 당하였다. 또 상장군(上將軍)인 김훈, 최질³²⁾ 등의 반란도 있었던 만큼 그는 이 난을 계기로 궁중의 시위(侍衛)를 전담하고, 또 6위를 통제할 수 있는 특수부대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2군을 설치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고려사 권4세가 권제4 현종1 5년11월조).

32) 현종5년11월에 “상장군 김훈과 최질 등이 여러 위군(衛軍)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키니 중추원사(中樞院使) 장정우와 일직(日直) 황보유의(皇甫俞義)를 유배시켰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다(고려사 권4세가 권제4 현종1 5년11월조).

1) 2군의 조직 및 편성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응양군은 1령(領)으로 되어 있었으며 상장군1인(정3품), 대장군1인(종3품)을 두었고, 영(領)에는 장군1인(정4품), 중낭장2인(정5품), 낭장2인(정6품), 별장2인(정7품), 산원(散員)3인(정8품), 위(尉)20인(정9품), 대정(隊正) 40인으로 하였다(고려사 권77 백관지2 西班條). 응양군은 1령으로 편성되어 병졸이 1천명에 불과하였으나 그 지위는 6위보다 상위에 있었고, 또 같은 2군이라도 응양군의 상장군(上將軍)이 가장 우월한 직위에 있었다. 응양군의 최고 지휘관인 상장군을 특별히 반주(班主)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반주(班主)란 무반(武班)의 長이라는 뜻으로 응양군 상장군이면서 병부상서를 일컫는 말이었다.³³⁾

용호군은 2령(領)으로 되어 있으며 軍에는 상장군1인, 대장군1인으로 하였다. 각령(領)에는 장군 각1인, 중낭장 각2인, 낭장 각5인, 별장 각5인, 산원 각5인, 위(尉)는 각12인, 대정은 각 40인으로 하였다. 용호군은 2령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병졸은 2천명이었고, 응양군과 더불어 6위의 상위에 있었다.

2) 2군(二軍)의 임무

2군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나라의 경호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려시대의 2군의 조직편성과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헌상 오늘날의 경호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응양군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려사 백관지에 보면 “응양 용호군의 상대장군(上大將軍)을 근장상대장군(近仗上大將軍)이라 칭하였고 장군은 친종장군(親從將軍)이라 칭하였으며 중낭장 이하도 또한 근장(近仗)이라 칭하였다”(고려사 권77 백관지2 西班 응양군 세주(細註)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용호군의 임무와 관련하여서는 서반(西班)條에 “충선왕이 용호(軍)을 고쳐 호책군(虎賁軍)이라 하였다가 뒤에 친어군(親禦軍)으로 고치고 뒤에 다시 고쳐 용호군(龍虎軍)이라 하였다”는 문헌상의 근거로 보더라도 용호군은 왕의 친어(親禦)를 임무로 하는 부대였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2군의 임무와 관련하여 서궁이 지은 고려도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고려도경 장위(仗衛)³⁴⁾편에 용호군의 지휘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

33) ……또 응양군의 상장군으로 군부상서(軍簿尙書)를 겸한 자를 반주(班主)라 칭하였다(…又揚軍上將軍兼軍簿尙書者稱班主)(고려사 권77 백관지2 西班 응양군 細註).

34) 장위는 의장호위(儀仗護衛)를 말한다.

사하고 있다. “용호좌우의 친위(龍虎左右親衛) 기두(起頭:부대의 책임자)는 둥근 무늬의 비단옷을 입고 도금한 허리띠를 차는데, 다리 모양의 뿔이 달린 모자는 중국의 복식제도와 비슷하다. 작은 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6군(六軍, 6위를 말하는 뜻함)을 지휘하는데 군위(軍衛)의 대장인 듯하다. 궁성 내에는 기두(衛)가 두 사람인데, 사신이 오면 한 사람을 의장대(兵仗)내에 배치하여 앞서 말 달리면서 인도하게 한다. 대체로 사신을 모시며 공급을 담당하느라 왕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했다”고 서공은 기술하고 있다.³⁵⁾

여기에서 용호좌우위 기두는 아마도 상장군이나 대장군을 말하는 것 같고, 이들의 임무는 임금을 호위하는 병사들을 감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신이 오는 경우에도 호위를 총괄하는 최고의 감독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지휘관들에 대하여 “용호좌우친위의 군장(軍將:장교를 말하는 뜻함) 역시 둥근 무늬의 비단 옷을 입고 도금한 허리띠를 찬다. 모자에 달린 두 다리 모양의 뿔이 꺾어지며 올라가는데 오른편이 약간 굽어있고, 금빛 꽃으로 장식하였다. 왕이 출입할 때에는 10여명이 우선(羽扇:깃털로 만든 가리개를 말함)과 금월(金鉞)³⁶⁾을 들고 뒤따른다.”³⁷⁾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보듯이 왕의 측근에서 호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용호군 장교들의 주임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용호군 말단 병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였을까?

“용호중맹군(龍虎中猛軍)은 푸른 베로 만든 작은 옷에 백저포(白紵布:흰 모시 베)로 만든 궁고(窮袴:가랑이가 있는 아랫도리 옷)를 걸치고 그 위에 갑옷을 입는데 어깨 가리개는 없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지 않으며 등에 매달고 다닌다. 각자 작은 창을 가지고 있는데 창 끝에는 흰 기를 달았다. 창의 길이는 1자(尺)가 못되며 그림을 그려 장식하였다. 조서를 맞아 성(城)에 들어오는 때나 조서를 받거나 표(表)를 올릴 때는 여러 장위(仗衛)의 뒤편에 자리잡으며 길 양쪽으로 나아간다. 왕부(王府)의 모임이나 바깥놀이에는 갑옷을 입지 않는다. 장위(兵仗)가운데 이 부대가 가장 많아서 대략 3만 명 정도 된다.”³⁸⁾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용호군 소속 하의 병사들은 장교이상의 간부들과는 달리 복장도 간편하고 무기도 실전에 사용할 수

35) 고려도경 권제11장위(仗衛)－ 용호좌우친위기두.

36) 금월은 대략 주부(柱斧:도끼 모양을 한 깃대)와 비슷하다. 왕이 행차하면 용호친위군장 한 사람이 이를 잡고 뒤따른다.

37) 고려도경권제11장위(仗衛)－ 용호좌우친위군장.

38) 고려도경 권제11장위(仗衛)－ 용호중맹군.

있도록 1자 정도의 창을 들고 있다. 고려도경 절장(節仗) 편에 “사신의 행렬을 맞이할 때 맨 앞 신기대 그리고 다음으로 용호군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었는데, 1만 명 가량 인 이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길을 끼고 행진한다”³⁹⁾고 기술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응양·용호군의 장교를 근장상대장군, 친종장군, 근장(近仗)이라고 부른 점, 충선왕 때 용호군을 친어군(親禦軍)이라고 칭한 것 등에서 왕의 친위군(親衛軍) 또는 시위군(侍衛軍)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2군은 고려초기 내군부(內軍部)의 임무를 대신한 왕궁경호의 군대였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김형중, 1998:81).

3) 2군의 자격과 선발과정

2군6위의 자격과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고려사 곳곳에 산재하여 보이고 있다. 현종 9년9월에 “선화문에 거동하여 3위(6위중의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등 세 위(衛)를 말함)와 응양군의 공신자손 및 문반(文班) 6품 이하의 무예가 있는 자를 모아 시험하여 과등(科等)을 정하였다”라고 하고 있고(고려사 권81 志 권제35 兵1 현종9년9월), 또 문종4년10월에 “근장장교(近仗將校)는 제영부(諸領府, 여러영부) 중에서 어선(御選, 국왕이 직접 뽑음)한 풍채가 준수하고 공로가 많은 자로 충당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고려사 권81 志 권제35 兵1 문종4년조).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금위군사들에 대하여는 훈련 등을 부단하게 시키고 있는 것 등이 고려사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고려사 문종13년3월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금위(禁衛)군사들을 훈련시켰고, 또 문종13년10월에 근장제군(近仗諸軍, 호위하는 여러 군사)을 동쪽 교외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 등이 보인다(고려사 권81 志 권제35 兵1 문종13년10월조). 따라서 근장장교(近仗將校) 이상은 국왕이 직접 뽑았고, 근위군사의 교육훈련까지도 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3.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한 논의

2군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공학군(控鶴軍)과 견룡군(牽龍軍)을 들 수 있다.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한 명칭은 숙종대부터 시작하여 무신란 발생시 곳곳에서 산재(散在)해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공학군과 견룡군이 2군 소속인가 아니면

39) 고려도경 권제24절장(節仗)편.

별도의 친위부대인가 하는 점이다. 서궁이 지은 고려도경에는 6軍(여기서 6군은 6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을 용호, 신호, 흥위, 금오, 공학으로 기술하고 있어 고려사 병지(兵志)에 기술한 6위와 달리 2군의 하나인 「용호」와 또다른 「공학」이라는 부대명칭을 기술하고 있다(고려도경 권제11 장위).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오류인 것 같고 「공학」이라는 부대는 6위에는 없는 명칭이다.

공학군(控鶴軍)에 대하여 이기백은 응양군에, 건룡군⁴⁰⁾은 용호군에 비견시키고 있고(이기백, 1976:98), 이에 반해 주등길지(周騰吉之)는 건룡군을 천우위(千牛衛)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周騰吉之, 1980:511-531),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1) 공학군(控鶴軍)

서궁의 고려도경에서 공학군과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기술되고 있다. “공학군은 왕을 가까이 모시는 군대로서(근위병) 검붉은 무늬의 비단도포를 입었는데 오색(五色)의 둥근꽃 무늬를 사이사이에 수놓아 장식하였다. 위가 꺾여진 모자(두건)을 쓰고 대략 수십인이 조서를 실은 가마를 받들고, 왕이나 사신이 사사롭게 조서를 보려고 왕래할 때는 상자와 대그릇으로 받들다”(고려도경 권제11 장위1)라고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맥상 공학군은 외국사신이 왔을 경우 문서나 예물을 받들고 국왕과 사신사이를 왕래하는 군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공학군을 응양군에 비견한 이기백의 견해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건룡군(牽龍軍)

건룡군을 천우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 주등길지(周騰吉之)의 주장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금군(禁軍)은 2군과 6위 중 천우위는 국왕을 호위하고 의장을 담당하는 친위군이었던. 건룡군은 금군 내의 개별부대 가운데 주목되는 부대였다. 건룡군의 존재가 문헌상 최초로 나타나는 시기는 숙종대이다. 고려사 숙종7년9월 “무자(戊子)에 관풍정에 행차하였다가 회복루(會福樓)에 환어(還御, 돌아감)하여 건룡관(牽龍官)⁴¹⁾에게 命하여 활을 쓰게 하였다”(고려사 권11 세가 권11 숙종1)라는 대목

40) 무신난을 일으킨 대표자격인 정중부가 건룡군 교위출신이었고, 이의방과 이고(李高)또한 건룡군 장교였다.

41) 건룡은 고려시대에 국왕이 순행(巡行) 할 때에 위장대(衛仗隊, 측근경호)의 일종이며, 건룡관은 건룡의 지휘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려사 권11 세가 권제11 숙종1).

에서, 견룡관이 국왕을 최측근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 동년 11월에(원문에는 十月이라 표기되고 있으나 1의 자가 탈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임오(壬午) 삭(朔, 그믐)에 왕이 우타천(牛陲川)에 이르렀을 때 들에 범이 있어 갑자기 튀어나오자 시봉(侍奉)하는 군사에게 명하여 이를 쫓게 하니, 견룡교위 송종소(宋宗紹)가 이를 쳐죽이자 종소에게 의일습(衣一襲, 옷한벌)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왕을 시봉하는 측근은 여러 부대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견룡교위(견룡군 장교)가 위험상황에서 범을 처치했다는 것은 국왕의 호위에 있어 다른 측근 경호부대보다 충성심이 유달리 강한 부대이고, 가장 측근에서 신변호위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想定할 수 있다(김낙진, 1994: 10-11). 그리고 견룡군은 국왕의 행차시 때뿐만 아니라 궁성안에서 숙위임무도 수행하였다는 점은 다음의 사실 등에서 입증된다.

고려사절요에 “어사대가 진언하기를 수창궁 북문은 항시 봉쇄되어 있는데……교위 정중부 등이 마음대로 열고 출입하여 스스로 오만하니 계급을 강등하자고 청하였으나, 왕은 듣지 아니하고(어사대를) 위로하면서 이해시켰다(고려사절요 권11 의종원년12월)”⁴²⁾고 기술하고 있어, 숙위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정중부는 견룡군이였다. 그런데 수창궁 북문을 마음대로 출입하였다는 사실은 곧 국왕이 있던 내정(內庭)을 출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왕이 잠을 자던 내정에서 견룡군이 숙위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여기서 2군의 친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룡군을 왜 창설했을까 하는 점이다. 견룡군은 숙종 때 문헌상 처음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숙종 당시의 상황과 연관이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숙종은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왕권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생길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측근시위대로써 강력한 친위군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군대의 지휘권이 고위 무관들에 의해 상당부분 독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2군만으로는 왕이 기대할 수 있는 신변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친위군의 창설이 또한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견룡군의 설치였다고 볼 수 있겠다(전태인, 2005:79). 견룡군과 관련하여서는 지면의 제약상 더 이상 논하지 않겠지만, 다만 고려시대 금군의 일종인 견룡군의 설치목적, 선발 및 인적구

42) 필자가 의역하였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성, 임무, 정치적 성격 그리고 무신난과의 상관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단일주제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공학군은 이기백의 주장처럼 응양군과는 다른 친위군의 일종으로 외국사신이 왔을 경우 문서나 예물을 받들고 국왕과 사신 사이를 왕래하는 금위부대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된다. 반면, 건룡군은 금군(禁軍)내의 개별부대 가운데 하나로써, 천우위와는 다른 국왕을 호위하고 수행하며 심지어 궁성안의 숙위까지 전담하던 최측근 부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등길지(周騰吉之)의 주장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V. 결 론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경호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문헌상 삼국시대까지는 호위제도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기술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언급은 거의 없는 반면,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도경 등의 문헌 등에서 공적 경호(왕실 경호)조직이나 기능 등에 관한 단서 등이 상당부분 곳곳에 산재하여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은 우리나라의 호위제도와 관련하여 기본 틀을 구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물과는 달리 고려시대 전기의 공적 경호(왕실 호위)에 한정시켜 1차 사료인 문헌 등을 바탕으로 분석과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호위와 관련성이 있는 조직을 전체 대상으로 삼았으나, 그 중에서도 고려전기의 핵심기관인 2군6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의 핵심 내용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려전기 시대의 관제상(官制上) 호위(경호)관련 기관으로는 내군부(內軍部)·병부(兵部)·중추원(中樞院)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물에서는 내군부와 관련하여 대부분이 고려초기 왕궁의 경호를 담당하던 친위부대였다고만 기술하고 있고, 왜 내군부가 친위부대인지 그 이유나 기능 등에 대하여 언급한 저서나 연구는 거의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려사 등을 토대로 분석·평가하여 그 근거 등을 제시하였고, 내

군부가 고려 초기 왕궁 경호 등의 책임을 맡았던 부서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고증하였다. 아울러 중추원은 기존의 연구물에서 공적 경호기관으로 거의 누락이 되고 있거나, 설사 기술이 되었더라도 오류상의 견해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한편 병제상(兵制上)으로는 2군6위, 공학군, 견룡군 등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고, 특히 연구 부재인 2군6위를 중심축으로 하였다. 2군(응양군·용호군)은 문헌상 오늘날의 경호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로써, 왕의 친위군 또는 시위군(侍衛軍)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그 역할이나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물 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중국 측 사료인 고려도경에서 그 조직의 인원 및 임무 등의 자료 등을 발굴하여 보완한 것도 연구 결과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6위(六衛) 중 호위제도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금요위와 천우위를 중심으로 고려사와 중국 측 사료인 신당서 등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조직의 운영 그리고 심지어 위치까지 밝혀내어 호위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입증하였다. 그리고 호위기관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하여도 이기백이나 주등길지 등이 주장하는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의 견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도 또 하나의 연구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고려시대 전 시기를 경호사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려전기는 절대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경호 중심의 호위제도로서 군사권과 경호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경호권은 군사력의 강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았다. 이런 연유 등으로 고려시대에는 무인난을 분수령으로 하여 군사권이 무인집권세력에게 집중되면서 고려전기의 공식적 호위 제도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고, 무신집권자의 신변보호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사적 경호가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호위제도는 크게 공적 경호 중심인 고려전기와 무신집권자의 신변경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적 경호체제 중심인 고려 후기로 대별해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려시대 전기의 공적 경호제도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경호사적 측면에서 그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이고 심화적으로 체계화시켜 경찰역사의 전통성과 연속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 자료들을 발굴하고 분석·평가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호위제도로서의 기구와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두어야만 할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도 문헌상에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에 관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연하여 고려시대의 경호사적 제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고려후기 호위제도(무신집권이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는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와 고려후기의 호위제도의 차이점과 연계성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오늘날 사설경호의 기원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욱, 김석범 (2006). **한국경찰사**. 경기:경찰대학출판부.
- 국사편찬위원회 (1988).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2**. 서울:국사편찬위원회.
- 김낙진 (1994). **고려시대의 건륭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두현 (2003). **경호학개론**. 서울:백산출판사.
- 김상기 (1961). **고려시대의 총설 고려시대사**. 서울:동국문화사.
- 김형중 (1990). **한국고대경찰사**. 서울:수서원.
- _____ (1998). **한국중세경찰사**. 서울:수서원.
- _____ (2011). **고려전기 금오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0(3), 1-34.
- _____ (2013). **고려국초 순구부의 실체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0(1), 203-231.
- 김홍 (2003). **한국의 軍制史**. 서울:학연문화사.
- 내무부치안국 (1972). **한국경찰사 I**. 서울:광명인쇄공사.
- 박용운 (1976). **고려의 중추원연구**. 한국사연구12, 105-109.
- _____ (1991). **고려시대사**. 서울:일지사.
- 변태섭 (1971).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서울:일조각. 95-96.
- _____ (1986). **고려사의 제문제**. 서울:삼영사.
- 송인주 (1997). **고려시대 금군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정수 (1996). **고려전기 6위제도 연구**. 경원전문대논문집. 18(2), 1-34.
- 윤경호 (2001). **한국사의 이해**. 서울:느티나무.
- 이기백 (1968). **고려병제사연구**. 서울:일조각.
- _____ (1976). **한국사신문 개정판**. 서울:일조각.
- 이병도 (1972). **한국고대편**. 서울:을유문화사.
- 이성무 (1999). **조선의 사회와 사상**. 서울:일조각.
- 이성진, 김의영, 이종환 (2007).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413-428.
- 이이화 (1998). **한국사이야기④, 남국신라와 북극발해**. 서울:한길사.
- 이홍식 (1982). **국사대사전**. 서울:한국출판사.
- 전경숙 (1997). **고려 최씨집권기의 도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군사시설과 방위구역**. 한국중세사연구. 28, 405-438.

전태인 (2005). 고려시대 무예활동을 통한 친위조직연구. 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경현 (1992). 고려전기 2군6위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등길지 (1980). 고려조관료제 연구. 법정대학출판국. 125-129.

하현강 (1989). 한국중세사론. 서울:신구문화사.

고려도경, 구당서(舊唐書), 고려사절요, 삼국사기, 신당서, 통전(通典)

譯註高麗史 (1987). 동아대학교편.

<http://terms.naver.com/entry.nhn?> 검색일 2013.7.7.

【Abstract】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Security for the Royal Household in the Early Koryo: focused on 2Gun6Wii

Kim, Hyeong-Jung

It is believed that the Koryo dynasty era is the period which has very special meaning with regard to the history of the VIP guard system. The guard system in the early Koryo dynasty time focused on the official protection for kings and their families with absolute royal authority. On the contrary, the guard system in the late Koryo dynasty time, especially military regime period, conducted providing private protection for military rulers and increasing their power. The official guard troops named 2Gun6Wii became just perfunctory organizations at that time. That is the reason why this study develops the discussion only about the guard system of the early Koryo time.

The official VIP guard organizations under the government structure of the early Koryo period were Naegoonbu, Byeongbu and Joongchoowon. This study particularly reviewed the Joongchoowon with thorough research. In the meantime, the guard organizations under the military chart of the early Koryo period were 2Gun6Wii, Gonghakgoon, Geonryonggun and so on. 2Gun consisted of ungyanggun and yonghogun. They were the royal bodyguards. This study especially tried to review the substance of the Gonghakgoon, Geonryonggun with different point of view from other theories. The Gumowwii, one of 6 Wii, conducted many official duties such as royal palace protection, capital city Gaesung defence, area patrols, criminal apprehension and disturbance prevention. It also accomplished crowd control and convoy mission at the streets to respond emergency cases while carrying out VIP protection roles for kings and Chinese diplomats. Many bibliographies verified that the

Chunwoowii was the royal bodyguards which helped kings during state ceremonies and grand meetings held by kings. Consequentially, it is true that this study discovered, analyzed and evaluated various references and research materials related with the guard system.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newly reviewed the organizations and functions of the guard system as one structure.

Key words : Royal security, Royal Bodyguards, 2Gun6Wii, Geonryonggun, Joongchoowon